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3.

발 의 자 : 이용우 · 박민규 · 민병덕
김 윤 · 이주희 · 박지혜
박정현 · 임미애 · 백승아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· 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(이른바 “푸른씨앗”)의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함(안 제2조제14호, 안 제26조제6호).
- 나.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범위 확대는 2026년부터는 상시 50인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, 2027년부터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적용함(부칙 제2조).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4호 중 “30명 이하”를 “100명 미만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6호 중 “30명 이하”를 “100명 미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단의 퇴직연금사업에 대한 특례) 제2조제14호 및 제26조제6호의 개정규정 중 “100명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.

1. 2026년 1월 1일부터: 50명
2. 2027년 1월 1일부터: 100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”란 중소기업(상시 <u>30명</u>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·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.	14. ----- ----- <u>100명</u> 미만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5. · 16. (생 략)	15. · 16. (현행과 같음)
제26조(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·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	제26조(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공단(공단의 퇴직연금사업	6. -----

대상은 상시 <u>30명 이하</u>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)	----- <u>100명 미만</u> ----- ----- ---
7. 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